

## 주요 언론조정중재사례를 통해 본 언론분쟁의 현황 및 보도 시 유의점

일시 : 2011년 11월 30일(수) 14:00 ~ 17:00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 홀)



언론중재위원회 ·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공동 토론회

## 주요 언론조정중재사례를 통해 본 언론분쟁의 현황 및 보도 시 유의점

일시 : 2011년 11월 30일(수) 14:00 ~ 17:00

장 소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 홀)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

**언론중재위원회**

- 이 책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은 당 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 토론회 순서

- 14:00~14:30      **국민의례 및 개회**  
▶.....
- 14:30~14:55      **발제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조정중재사례로 본  
                    언론분쟁의 현황 및 보도 시 유의점 - 장재운 (중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 14:55~15:25      **제1주제 자유토론**  
                    사회 - 박 성 희 (중재위원,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
- 15:25~15:45      **휴식시간**  
▶.....
- 15:45~16:10      **발제 2.**  
                    보도청구 관련 조정사례로 본  
                    언론분쟁의 현황 및 보도 시 유의점 - 김충일 (중재위원, 前 경향신문 기획사업본부장)  
▶.....
- 16:10~16:40      **제2주제 자유토론**  
                    사회 - 박 성 희  
▶.....
- 16:40~17:00      **총 평**  
                    권 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제1주제논문

# 손해배상청구 관련 조정중재사례로 본 언론분쟁의 현황 및 보도 시 유의점

장 재 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제1중재부장)



## 목 차

### 손해배상청구청구 관련 조정중재사례로 본 언론분쟁의 현황 및 보도 시 유의점

I. 언론조정중재제도 개관 .....	10
1. 언론보도에 따른 법적책임 .....	10
2. 관련 분쟁 해결기관 .....	10
3. 언론조정중재제도 .....	10
II. 언론 보도 시 유의할 점 일반 .....	13
III. 손해배상청구 관련 최근 주요 조정중재사례 및 보도 시 유의할 점 .....	14
1. 피해자의 동의여부 및 범위가 쟁점인 사례 .....	14
2. 초상권 침해 관련 사례 .....	24
3. 사실보도지만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위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	31
4. 포털에 대해 독자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32
5. 방송출연자에 대한 비방성 댓글과 함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해 문제된 사례 .....	35

# 손해배상청구 관련 조정중재사례로 본 언론분쟁의 현황 및 보도 시 유의점<sup>1)</sup>

장 재 윤(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제1중재부장)

## I. 언론조정중재제도 개관

### 1. 언론보도에 따른 법적책임

- 민사책임 : 손해배상청구 등(민법 제750조, 751조 1항, 764조)
- 형사책임 :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형법 제309조)
- 특별법에 따른 책임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sup>2)</sup> 상 정정보도청구 등

### 2. 관련 분쟁 해결기관

- 법원 : 제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절차진행
- 언론중재위원회 :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언론조정중재 사건 담당 - 임의적 절차

### 3. 언론조정중재제도

#### 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1981년에 도입

1) 본고는 발표용 자료일 뿐 연구논문이 아니므로 인용이 적절하지 아니함을 밝혀 둠.

2) 언론피해구제제도에 대한 단일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5. 1. 27. 법률 제7370호로 제정된 이래 2011. 4. 14.까지 4차에 걸쳐 개정됨. 이하 '언론중재법' 또는 '법'이라고 약칭.

— 설치 목적: “이 법은 언론사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sup>3)</sup>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1조)

#### 나. 조정 및 중재 —손해배상청구 관련<sup>4)</sup>

##### 1) 조정

— 피해자는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보도가 있는 후 6개월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법 18조 2항)

— 조정 성립 시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법 23조)

##### 2) 중재

— 당사자 양쪽은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법 24조 1항)

—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법 25조 1항)

#### 다. 대상 매체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 등’ 이라고 함, 법 2조 1호, 18호, 20호)

#### 라. 금지행위 및 면책규정

— 언론 등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3) 2009년경 언론보도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매개만 하는 포털뉴스나 언론사닷컴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자 추가됨.

4) 법에서는 언론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와 관련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청구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본고는 손해배상청구를 중심으로 기술함.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법 5조 1항)

— 다만,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 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법 5조 2항)

- 1)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 2)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마. 판단의 준거

— 언론의 자유 신장과 인격권의 보호라는 두 기본권의 조화로운 해석 즉,

1) 언론의 자유와 독립 보장과 이에 대한 규제, 간섭 불허.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 및 취재정보의 공표권 보장 조항(법 제3조)과 2) ⊖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논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임무를 수행한다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 조항(법 4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의 이익을 형량하여 침해여부를 판단하게 됨.

#### 바. 손해배상의 내용

—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

— 관련 규정(법 30조)

1)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

2)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위 규정은 법원에 제소한 경우에 관한 것.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조정중재 사건의 경우에도 위 조항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산정

보도 동기, 당사자의 동의 유무, 유포의 정도(발행부수, 독자층의 구성, 기사의 크기 및 보도매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횟수, 보도의 진실성, 비방의 정도, 사회적인 관심도, 보도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결정함.

## II. 언론 보도 시 유의할 점 일반

— 자신의 보도가 I.의 라.항에 기재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가를 판단한 이후 이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보도해서는 안 될 것임.

다만, 보도내용이 위와 같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항 단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사유 즉,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도할 수 있음.

위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 가동하여야 할 준거는 I.의 마.항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을 것임.

—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

1) 피해자 특정 요건 :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

하여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보도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보도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될 수 있음.

2) 구체적 사실의 적시 요건 : ㉠ 기사가 그 전체로 보아 그 사실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할 경우 타인의 말을 전달하는 형태도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될 수 있음 ㉡ 기사 본문의 내용과 다른 인상을 주는 특정한 제목, 표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독자가 그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명예훼손 성립가능.

### III. 손해배상청구 관련 최근 주요 조정중재사례 및 보도 시 유의할 점

#### 1. 피해자의 동의여부 및 범위가 쟁점인 사례

##### 가. 미담기사여부 불명, 동의 없는 성명과 초상의 공개로 인격권 침해가 문제된 사례

(2011서울중재95, 손해배상 조정신청 사건에서 전환됨)

##### 1) 사건의 개요

2011. 2.경 피신청인 발행의 ○○신문은 “15년 만에 쓴 학사모... ‘가난한 아이들 가르칠 터’” “방송통신대 졸업한 000씨”라는 제하에 신청인이 방송통신대를 15년에 걸쳐 30학기 만에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사실을 소개함. 그 기사에는 신청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보살피고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방송통신대를 다닌 것이며, 신청인의 원래 전공은 성악이고 피아노 학원을 운영한 사실, 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 열정에 재수강을 거듭하느라 등록학기가 30학기에 이른 것으로 기재됨. 기사 우측상단에 학사모를 쓴 신청인 및 2명의 다른 졸업생 사진을 싣고 사진 아래쪽에 신청인의 성명 및 사진 속의 위치를 표시함.

신청인은 『신청인의 초상, 성명, 나이 등을 기재하지 말 것을 기자에게 요청하였음에도, 피

신청인의 독자적 판단으로 이 기사가 신청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미담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게재한 것이다. 그러나, 미혼인 신청인은 자신의 나이 등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 알려짐으로써 보도를 접한 친척, 친구들과의 말싸움, 의욕상실, 대인기피 및 이로 인한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방통대 졸업생들의 사연은 모든 언론사의 관심사이고 역경을 딛고 졸업장을 받은 신청인의 사연은 독자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신청인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기사를 실은 점은 인정. 다만, 인터뷰를 마친 뒤 신청인이 ‘나이와 사진은 빼 달라’고 이야기 하자 취재기자는 ‘나이는 뺄 수 있는데 인물 면에 게재되는 기사라 사진은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으나 신청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를 사진게재에 대한 동의로 판단함. 신청인의 기사 삭제요구 후 즉시 신문사 홈페이지 및 주요 포털에 연락해 해당 기사 삭제함. 조정신청이 있는 후 사회부 차장을 통해 신청인에게 사과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100만원 정도의 배상 용의가 있다』라는 답변.

## 2) 사건 관련 사항

청구명 : 손해배상청구

신청인 : ○○○

피신청인 : (주)○○신문

중재부 : 서울제1중재부

접수일 : 2011. 7. 0.

처리결과 : 중재전환 후 중재판정

## 3) 대상 보도<sup>5)</sup>

2011. 2. 0. 피신청인 발행의 ○○신문 기사 “15년 만에 쓴 학사모... ‘가난한 아이들 가르칠 터’” “방송통신대 졸업한 000씨” 라는 제하.

---

5) 대상보도 등을 인용함에 있어 당사자가 특정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기사에 실명 등이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고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0 또는 다른 부호로 표시한다. 이하 같음.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보살피고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30학기 만에 유아교육과 졸업장을 받아든 만학도가 있다.(중략) 000씨가 방송통신대 유아교육과에 입학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5년전. 보통 대학을 8학기에 마치는 것과 비교하면 000씨의 30학기는 방송통신대 설립 이후 최장기록이다.(중략) 000씨는 음대에서 성악을 전공한 뒤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을 가르쳐 왔다.(중략) 000씨가 학위취득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30학기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더욱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 열정에 재수강을 거듭하느라 등록학기가 30학기에 이른 것이다. 기사 우측상단에 학사모를 쓴 신청인 및 2명의 다른 졸업생 사진을 싣고 사진 아래쪽에 신청인의 성명 및 사진 속의 위치를 표시함.

#### 4) 신청 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 5) 사건 처리 결과

양 당사자의 중재합의 후 다음과 같이 중재판정

##### 1.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년 8월 10일까지 1,7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0%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2. 이 유

가. 이 사건 보도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주식회사 00신문사는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신문 2011. 2. 0.자 00면「15년 만에 쓴 학사모… “가난한 아이들 가르칠 터”」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신청인의 초상 및 나이 등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신청인의 초상 및 나이에 대해 보도하지 말 것을 피신청인에게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보도하여 신청인의 초상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

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2011. 7. 위원회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금 5,000,000 원을 구하는 조정신청(2011서울조정881)을 하였다가, 2011. 8.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재절차에 따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 나. 판단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권리라 할 것이다. 이러한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 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 가치 등이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기사는 신청인의 초상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표될 정도로 중대한 필요성에 의해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알리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초상 및 나이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는 등 심한 불쾌감을 느껴 정신적 평온의 침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보도경위, 보도 내용 및 신청인의 나이·직업, 피신청인측 인터넷 기사에 대한 후속조치 등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 1,700,000원으로 한다.

#### 다. 결론

당 중재부는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 보도시 유의점

미담성 기사를 취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사 내용에 따라 상대방이 신원의 노출을 원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상 보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함이 바람직함.

## 나. 동의 범위를 초과한 보도로 인격권 침해가 문제된 사례(2011서울조정1031 손해청구)

### 1) 사건의 개요

피신청인 주식회사 ○○방송 저녁 9시 ○○데스크는 “카드사, 신용카드 금리 수수료 내린다” 라는 취지로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점을 소개함. 피신청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소개를 받아 신청인을 인터뷰대상자로 선정한 뒤 인터뷰하게 됨. 인터뷰 과정에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영업하는 모습, 얼굴, 성명, 나이, 직업 등 신청인의 신원이 그대로 드러나고 또 신청인이 신용카드 대출을 받은 사실, 아직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다시 현금서비스 200만원을 받은 사실, 그것은 리볼빙 대출로서 이자가 연 21%나 된다는 내용이 자막표시와 함께 기자의 내레이션으로 소개됨.

신청인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정책을 알리는 취지에서 자산관리공사 측의 인터뷰 제의에 동의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의 촬영을 용인한 사실은 있지만,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였는데, 위 보도로 인하여 자신의 신용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확인전화를 받아야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신청인의 인터뷰 전제조건을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 그러나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신청인이 인터뷰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고 인터뷰 당시 신청인이 자신의 신원공개여부와 관련한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하자 이를 신원공개에 대한 동의로 보아 위와 같이 보도하였다고 주장.

### 2) 사건 관련 사항

청구명 : 손해배상청구

신청인 : ○○○

피신청인 : (주)○○방송

중재부 : 서울제1중재부

접수일 : 2011. 8. 31.

처리결과 : 조정성립

### 3) 대상 보도

2011. 8. 0. 저녁 9시 ○○데스크 “카드사, 신용카드 금리 수수료 내린다” 제하

“신용카드 대금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서비스를 보통 리볼빙이라고 하는데요. 이자가 사채이자만큼 비쌉니다.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의 요구로 리볼빙과 연체이자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000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교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000씨 신용카드 대출 800만원도 아직 못 갚았는데, 최근에 또 현금서비스를 받았습시다. 조금씩 나눠 갚으면 된다는 리볼빙 대출이었지만 문제는 이자가 연 21%나 됐습시다.” 위 내레이션과 함께 신청인의 얼굴이 드러난 상태에서 인터뷰하고 식당의 모습이 여과없이 소개되며, 자막 -000(37세, 식당운영) 현금서비스 2백만원 받았어요. 방학때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통장에 잔고가 10%만 있으면 된다더라고요-이 제시됨

### 4) 신청 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 5) 사건 처리 결과

양 당사자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조정성립.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명한다. 이와 함께 2011년 9월 21일까지 1,000,000 원

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0%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본 보도와 관련하여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6) 보도 시 유의점

취재 상대방을 소개한 자료부터 취재승낙의 뜻만 전해 들었을 뿐, 신원의 노출과 관련한 동의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취재상대방이 인터뷰에 응하고 자신과 관련한 촬영을 허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곧바로 신원노출까지 동의한 것이라고 임의로 해석하여 취재상대방에게 직접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여서는 곤란함.

### 다. 미답성 기사이지만 신원노출로 인격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2010서울조정916)

#### 1) 사건의 개요

피신청인 ○○일보는 조정대상기사에서 지난 2007년 할아버지와 함께 탈북해 남한에 정착한 소년이 부모 없이도 남한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해가고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위 소년이 국군포로 출신의 탈북자인 신청인의 손자라고 함.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전협의 없이 기자가 학교로 찾아가 손자를 취재하고 사진을 찍은 후 집으로 찾아와 신청인에게도 사진을 찍자고 함. 신청인은 사진, 이름 등 어떤 것도 실을 수 없다고 하자 기자는 손자에 대해서만 쓰겠다고 함. 그러나 보도에서 신청인과 손자의 실명을 비롯, 손자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의 이름 및 학년 등과 함께 신청인 가족이 북한에서 겪었던 과거사 등을 상세히 다룸으로써 신청인의 신원이 북한 당국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북한에 두고 온 신청인의 남은 가족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었다』라고 주장.

피신청인은 북측에 신청인의 가족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사실에 기초한 미답성 기사라고 답변.

## 2) 사건 관련 사항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

피신청인 : 주식회사○○일보사

증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0. 5. 25.

처리결과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1,500만원)

## 3) 대상 보도

2010. 5. 0. 자 ○○일보 A13면 『탈북소년 ○○이 “올해는 외롭지 않아요”』 제하의 기사- 친구와 자전거를 타면서 밝게 웃고 있는 ○○○군의 사진 첨부됨

5일 오후 4시쯤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서울○○초등학교 6학년 양○○(12)군이 같은 학교 친구 ○○(12)군과 함께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2007년에 탈북한 ○○군이 이렇게 어린이날 나들이를 하기는 처음이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부모가 없어 쓸쓸하게 어린이날을 보냈다. 하지만 올해는 친구 ○○군 가족의 초대로 함께 어울리며 어린이날다운 하루를 보냈다. …

○○군은 지난 2006년 한국에 온 국군포로 출신 탈북자 ○○(78)씨의 손자다. ○○군 가족은 2003년에도 탈북했지만 중국에서 북한 보위부에 잡혀 6개월간 감옥생활을 했다. ○○군은 “부모님은 그때 감옥에서 돌아가셨고 남의 집에 더부살이하던 동생은 행방불명됐다”고 답답하게 말했다. ○○군은 올해 학급회장을 맡을 정도로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담임교사 ○○씨는 “사정을 들을 때까지 북한 출신인줄 몰랐다. 의젓하고 책임감 있는 학생”이라고 했다....할아버지 ○○씨는 “부모도 없는데 밝게 자라고 있어 그저 고마울 뿐”이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 4)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 5) 사건처리결과

중재부에서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함. 양 당사자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 6) 보도시 유의점

취재 상대방의 신원이 노출될 경우 그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가 예상될 수 있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그러한 우려를 표명한 경우에는 미답성 기사라 하더라도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함이 바람직함.

### **라. 연애문제를 당사자 동의 없이 보도하여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이 문제된 사례**

(2011서울조정657 손해청구)

#### 1) 사건의 개요

조정대상기사는 신청인이 전 애인을 협박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됨. 지극히 사적인 사항들이 기사내용에 포함됨. 해당 기사에 대해 먼저 문제를 삼은 사람은 신청인의 전 애인이었던 남자 A씨. A씨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언론사는 기사를 삭제함과 아울러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

그 후 신청인 측에서 기사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신청인은 기자와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보도되는 것에 동의한 바는 없다고 주장. 또, 자신의 인적사항(이름, 나이, 성) 및 남자 친구와의 관계가 지나치게 자세히 보도되었음은 물론 과장되어 있고 문제가 있는 배신녀로 묘사되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지적.

결국, 언론사는 신청인에게 1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

## 2) 사건 관련 사항

청구명 : 손해배상청구

신청인 : ○○○

피신청인 : (주)○○○아이(○○뉴스)

증재부 : 서울제2증재부

접수일 : 2011. 6. 7.

처리결과 : 조정성립

## 3) 대상 보도

2011. 5. 0. ○○뉴스 「연인에서 앙숙으로 ... “줬던 선물 다 내놔” 협박에 고소로 맞불」 제하의 기사

그녀는 예뻐다. 솜털이 남아 있던 ○○○(○○, 여, 가명)씨의 하얀 얼굴은 웃을 때마다 발그스르하게 물들었다. ...

A씨는 작고 예쁜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다. 천천히 다가갔고, 둘은 연인이 됐다. 벌써 ○년 6개월도 지난 일이다.

항상 밝은 ○씨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종종 그늘이 드리웠다. 갓 학생 티를 벗은 여대생이 ... 흠여머니를 모시고 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쉽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대기업에 다니던 A씨는 ○씨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었다.

매달 용돈(10만원)을 주고 기념일이면 선물을 아끼지 않았다. 등록금까지 내줬다. 그렇게 그녀에게 쓴 돈이 400만원이 넘었다.

○씨에게 쓴 돈이 아깝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다만 A씨는 ○씨의 모든 것이 궁금했다. 집에 있다는 ○씨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전화를 하고, 자고 있다는 그녀를 깨워달라고 했을 뿐이다. ○씨는 언제부터인가 A 씨의 이런 행동을 답답해하는 것 같았다.

한 달 전,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씨에게는 곧 새 남자친구가 생겼다. A씨는 가슴 속에서 끌어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용돈을 주고 등록금까지 대신 내줬는데 자신에게는

돈만 받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었다. ○씨를 찾아가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 동안 선물한 물건 값을 물어내라’, ‘평생에 가장 후회할 일이 될 만큼 힘들게 만들겠다’ ...

헤어진 뒤 수차례 협박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받아온 ○씨는 결국 A씨를 고소했다.  
(후략)

#### 4) 신청 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라.

#### 5) 사건 처리 결과

신청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 6) 보도시 유의점

A씨와 관련하여 볼 때 비록 수사기관에 고소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인격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사적인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도함. 직접 취재한 ○씨에 대하여도 그가 인터뷰에 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A씨를 고소한 내용을 이 사건 보도와 같이 세세하게 표현하는 형태의 보도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동의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임.

## 2. 초상권 침해 관련 사례

가. ‘길거리스케치’ 보도를 통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된 사례(2010서울조정1532 손배청구)

### 1) 사건의 개요

피신청인 (주)○○○투데이는 조정대상기사에서 본격적인 겨울추위가 시작된 날 아침 서울 여의도에서 시민들이 두터운 목도리와 점퍼로 중무장을 하고 잔뜩 움츠린 채 출근길을 서두르

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을 게재함.

이에 대해 신청인은 당시 자신이 촬영되고 있는지 알지 못했으며, 신문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실도 없고, 위 사진기사로 직장에서 놀림감이 되고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함.

피신청인은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 인정.

## 2) 사건 관련 사항

청구명 : 손해배상청구

신청인 : ○ ○ ○

피신청인 : (주)○○○투데이

중재부 : 서울제6중재부

접수일 : 2010. 11. 29.

처리결과 : 조정성립

## 3) 대상 보도

2010. 11. 0. ○○○투데이 8면 『춥다 추워』 제하의 사진 캡션 기사

서울 영하 3도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된 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출근길 시민들이 두터운 목도리와 점퍼로 중무장하고 잔뜩 움츠린 채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 4) 신청 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 5) 사건 처리 결과

양 당사자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조정성립.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0년 12월 23일까지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시한다.

「본지는 지난 11월 0일 ‘줍다 추워’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내보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혀드렸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를 다하여 국민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도내용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본지를 대표해 사과드립니다.」

3.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6) 보도시 유의점

사진에 찍힌 사람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는 정도일 경우, 기사의 내용에 따라 그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가 예상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이후 보도여부를 결정함이 바람직함.

### 나. 잠입취재 시 몰카로 촬영한 장면을 보도한 사례(2010서울조정1410 손배청구)

#### 1) 사건의 개요

피신청인 ○○○○공사는 조정대상 보도에서 베트남에 여행을 간 한국인들이 마취 상태의 곰으로부터 채취한, 안전이 의심스러운 쓸개즙을 구입하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유리컵 속에 든 쓸개즙을 보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내보냄.

이에 대해 신청인은 당시 곰 농장 방문은 여행 패키지 상품의 일정에 따른 것으로 자신도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곰의 쓸개즙을 채취하는 장면을 보고 경악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고발 프로그램에 자신의 초상이 아무런 승낙도 없이 공표되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함.

피신청인 측이 신청인에게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한편, 프로그램 총책임자(CP)

가 신청인에게 사과서신을 발송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조정이 성립됨.

## 2) 사건 관련 사항

청구명 : 손해배상청구

신청인 : ○○○

피신청인 : ○○○○공사(○○○TV)

중재부 : 서울제2중재부

접수일 : 2010. 10. 20.

처리결과 : 조정성립

## 3) 대상 보도

2010. 9. 0. ○○○TV 「○○○고발」 ‘충격보고! 초저가 해외여행의 실체’ 제하의 방송

(전략)

리포터 : 베트남에서 한국 여행객들을 상대로 판매되고 있는 곰 쓸개즙. 좁은 우리 안에 곰을 가뒀다가,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바로 곰을 마취하고 쓸개즙을 채취합니다. 여행객들이 구입한 곰 쓸개즙, 과연 먹어도 안전한 것일까?

(후략)

## 4) 신청 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 5) 사건 처리 결과

양 당사자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조정성립.

1. 피신청인은 2010년 11월 5일까지 ○○○고발 프로그램 총책임자(○○○ CP) 명의(자필 서명 포함)로 된 서신을 신청인에게 송부하되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아 래-

○○○고발은 지난 9월 0일 <충격보고! 초저가 해외여행의 실체>편에서 동남아 여행의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최근 횡행하고 있는 저가 패키지여행의 폐해를 시청자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시청자들이 이와 같은 저가 여행 상품의 실체를 인식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제작진의 이와 같은 노력과 성의에도 불구하고, 짧은 제작 기간과 밤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 씨의 모습이 적절한 처리 없이 방송되어 여러모로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제작진을 대표해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고발 제작진은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 씨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피해 구제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신청인의 해량을 바랍니다.

2. 피신청인은 2010. 11. 5.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다. 포털 검색을 통해 발견한 미용실 홍보용 공개 사진을 뉴스에 사용한 사례**

(2011서울조정658·659 정정 및 손배청구)

### 1) 사건의 개요

피신청인 방송사는 2011년 5월 0일 ○○○ 아침뉴스타임 내 ‘살림충전’ 코너에서 알뜰 웨딩을 주제로 조정대상 보도를 방송. 해당 보도의 주된 취지는 고비용 결혼식이 팽배한 요즘, 20만 원에 불과한 저렴한 비용으로도 실속 있고 질 좋은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는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함.

해당 보도를 제작함에 있어서 결혼 준비에 필요한 항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헤어메이크업’ 이미지가 필요함. 제작진은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이미지(웨딩드

레스를 입고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 이미지)를 선택함. 이미지 선택 후 출처를 확인해보니, 미용업체 소속 헤어디자이너의 블로그에 전체 공개로 되어 있는 사진이었고 해당 미용업체 홍보 차원에서 공개한 이미지로 보여 제작진은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신청인의 이미지를 사전 동의 없이 방송에 사용함.

신청인은 자신의 이미지를 웨딩업체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했지만, 방송에 사용하는 것은 동의한 적이 없으며 자신은 저가의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함.

## 2) 사건 관련 사항

청구명 :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신청인 : ○○○

피신청인 : ○○○○공사(○○○TV)

중재부 : 서울제2중재부

접수일 : 2011. 6. 8.

처리결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3) 대상 보도

2011. 5. 0. ○○○TV 「○○뉴스타임」 ‘알뜰결혼대작전’ 제하의 보도

<앵커 멘트>

5월은 가정의 달이라지만 결혼의 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요즘 결혼식 참 많죠?

네, 5월의 신부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비부부들은 마냥 들뜬 마음으로 결혼식 준비하기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아 걱정도 앞서죠.

수요일의 알뜰정보 전해주시는 이 분께 도움을 청해볼까요.

000기자, 잘 알아보면 알뜰하게 결혼하는 법,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결혼을 위해 쓰는 돈이 무려 15조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행복해야 할 결혼이 갈등을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20만원이면 결혼 비용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합니다.(후략)

#### 4) 신청 취지

1. 피신청인은 <○○뉴스타임>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기사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보도문>

- 제 목 : 본 프로그램의 2011년 5월 0일자 ‘알뜰결혼대작전’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사의 2011년 5월 0일자 ‘알뜰결혼대작전’ 방송 중 배경화면으로 사용한 사진은 위 방송과 전혀 무관하게 입수한 자료로서 사진 속의 인물은 그러한 방법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을 알립니다.

#### 5) 사건 처리 결과

중재부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함. 양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어 위 결정은 확정됨.

#### 6) 보도시 유의점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공개된 사진 등이라 할지라도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인격 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 후 그러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의 사용승낙을 얻거나 또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인용함이 바람직함.

### 3. 사실 보도지만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위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2010전북조정27 손배청구)

#### 1) 사건의 개요

피신청인 (주)○○뉴스<sup>6)</sup>는 조정대상기사에서 강간치상혐의로 만기출소한 50대 남성이 자신의 친누나를 강간해 긴급체포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인 동생과 피해자인 누나의 성과 나이, 이들이 거주하는 동 이름 등을 적시함.

이에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신청인은 이 보도로 인해 주변인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함.

피신청인 측은 경찰의 자료를 근거로 보도하였고 반인륜적인 범죄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로 보도한 것이라고 답변.

#### 2) 사건 관련 사항

청구명 : 손해배상청구

신청인 : ○ ○ ○

피신청인 : (주)○○뉴스

중재부 : 전북중재부

접수일 : 2010. 9. 7.

처리결과 : 조정성립

#### 3) 대상 보도

2010. 8. 0.자 ○○뉴스 『강간치상혐의 만기출소 50대, 친누나 강간 -○○경찰, 강간치상혐의로 또 긴급체포』 제하의 기사

---

6) 규모가 크지 않은 지방언론사임.

(전략) 17일 ○○경찰은 강간치상 혐의로 A(나이. ○○동)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강간치상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고 이달 13일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였으며, 출소 후 모 아파트에서 자신의 누나 B(나이)씨와 함께 살고 있었다. 이날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누나가 평소 싫어하는 남자와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일명 맥가이버 칼인 등 산용 칼로 누나 B씨의 목 부위를 한차례 긁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런 행동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A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누나를 강간하는 폐륜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후략)

#### 4) 신청 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백만 원을 지급하라.

#### 5) 사건 처리 결과

심리 당시 중재부의 권고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뜻을 표시한 다음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되어 조정 성립.

#### 6) 보도 시 유의점

피신청인이 비록 경찰보도자료를 근거로 보도하였다고 하나, 동생이 교도소에 갔다 오고, 50대의 나이에 누나랑 같이 살고 있었다는 점과 거주지 동명, 그다지 흔하지 않은 피해자의 성씨가 기재됨으로써 지역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지인들에 의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보도됨. 범죄사실의 보도가 갖는 공익적 측면에 비하여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심각한 사안이 지인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보도됨으로써 입게 될 정신적 고통이 매우 중대함에 유의.

### 4. 포털에 대해 독자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2010서울조정1421 손배청구)

#### 1) 사건의 개요

피신청인 ○○○○커뮤니케이션즈(주)는 (주)○○○미디어로부터 조정대상 기사를 전송받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에 게시함.

신청인은 위 사이트를 비롯한 다수의 포털사이트를 통해, 추위로 잔뜩 움츠린 채 걷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담은 사진기사가 게시되어 있음을 확인한 뒤 즉시 해당 기사를 전송한 (주)○○○미디어와 이를 전송받아 게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들에게 해당 사진의 삭제를 요청.

신청인과 기사를 전송한 (주)○○○미디어 측으로부터 사진의 삭제요청을 받은 대부분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들은 해당 사진을 삭제함. 그러나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에서는 요청일로부터 만 하루가 경과되도록 해당 사진이 삭제되지 않음. 그리고 조롱성 댓글이 여럿 올라옴.

이에 신청인은 기사를 작성·전송한 (주)○○○미디어와는 별도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함.

피신청인은 계약상 ○○○경제가 송출한 기사를 전혀 편집하거나 취사선택할 권한이 없다고 답변.

## 2) 사건 관련 사항

청구명 : 손해배상청구

신청인 : ○ ○ ○

피신청인 : ○○○○커뮤니케이션즈(주)

중재부 : 서울제3중재부

접수일 : 2010. 10. 29.

처리결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3) 대상 보도

포털사이트 ‘○○○’가 매개한 2010. 10. 0. ○○○경제의 『“더 빨리, 더 빨리” 사라진 봄 가을 한국인의 기질을 바꾼다?』 제하의 기사

느긋한 봄과 가을이 사라지고 더위와 추위만을 오가는 2계절 환경이 되다 보니 안 그래도

다급한 한국인의 성미가 더욱 급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4계절은 한국인 특유의 적응력과 강인함을 키웠다.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뛰어난 적응력은 계절의 변화에 대처하면서 자연스럽게 길러졌고 한국인의 DNA에 각인돼 유전돼 왔다.

나른한 봄, 무더운 여름, 건조한 가을, 차가운 겨울 등 4계절은 절기의 특성에 따라 한국인의 오장육부에 건강한 자극을 주고 장기들이 적응하고 제 기능을 하면서 강인함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해 줬다.

그러나 봄과 가을이 실종된 채 더웠다가 갑자기 추워지고, 추웠다가도 어느날 느닷없이 더워지면서 우리 몸에는 이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좋지 못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 고대구로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세로토닌 같은 뇌 속의 신경전달물질이 계절의 이상 변화로 분비가 불규칙해지면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등 기후가 좋지 못한 지역에서 빈발하는 우울증이 우리나라에서도 일반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 교수는 “우리 몸이 계절 변화에 따라 일정한 주기로 적응해온 패턴이 깨지면서 수면장애나 위장기능 저하 등이 초래되고 이로 인한 호르몬 분비 이상의 영향으로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나 성격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4) 신청 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만 원을 지급하라.

#### 5) 사건 처리 결과

중재부는 15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함. 이후 양 당사자가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확정됨.

#### 6) 보도시 유의점

포털사의 경우 원 기사공급처와의 계약상 송출기사를 그대로 실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기사내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배상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5. 방송출연자에 대한 비방성 댓글과 함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해 문제된 사례

(2011서울조정1047)

### 1) 사건의 개요

2011년 9월 0일자 ○○데오 「짜 여자0호, 천사표? 신혼집 파탄낸 불륜녀? 과연 진실 무엇?» 제하의 기사에서는 모 방송사에서 방영 중인 남녀 단체 미팅 TV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는 신청인(미용업)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논란을 ‘불륜녀’란 표현과 함께 여과 없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방송 출연 장면을 담은 사진까지 공개함. 조정대상기사는 신청인의 방송 출연 이후 해당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루머일 뿐 사실 여부가 불투명한 내용임. 신청인은 이로 인해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

이에 대해 피신청인 측은 신청인에 대한 루머를 사실로 단정하지는 않았으며, 신청인은 이미 전국적인 방송에 출연하여 일반에 널리 알려졌으므로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

### 2) 사건 관련 사항

청구명 : 손해배상청구

신청인 : ○○○

피신청인 : (주)○○데오

중재부 : 서울제2중재부

접수일 : 2011. 9. 6.

처리결과 : 조정성립

### 3) 대상 보도

2011. 9. 0. ○○데오 「짜 여자0호, 천사표? 신혼집 파탄낸 불륜녀? 과연 진실 무엇?»

- ‘짜 천사표 여자 0호 결국 불륜녀로 확인...충격적인 진실’ 제하의 기사

천사표 출연자라고 불렸던 여자 0호가 불륜녀 의혹에 휩싸여 화제다. 하지만 방송 후 시청자 게시판에 여자 0호의 과거를 폭로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글을 쓴 한 네티즌은 “제 신혼 침대에서도 주무시고 가셨던 분이 천사표로 등장하셨다. 결혼식 후 신혼집문이 부서질 정도로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글의 전반적 내용을 요약하자면 글쓴이는 한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알고보니 그는 여자 0호와 양다리를 걸쳤으며 결혼 직후 여자 0호가 신혼집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려 결혼 한달만에 이혼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중략)

방송 이후 큰 논란을 일으켰던 ○○○ ‘짜’ 여자 0호에 대한 루머가 사실로 확인, 충격을 주고 있다.(후략)

4) 신청 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5) 사건 처리 결과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성립

6) 보도시 유의점

기사가 공익과는 무관한 사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 초상권을 침해하는 형태를 띠고 있고 특히 피신청인은 게시판에 특정 글이 게시되어 있다는 상황을 전달하고자 하였다고 변명하나 특정 글을 인용 전달하는 경우에도 그 기사가 전체로 보아 그 사실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할 경우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에 유의.

제2주제논문

보도청구 관련 조정사례로 본  
언론분쟁의 현황 및 보도 시 유의점

김 총 일

(前 경향신문 기획사업본부장, 서울제6중재부 중재위원)



## 목 차

### 보도청구 관련 조정사례로 본 언론분쟁의 현황 및 보도 시 유의점

I. 서 론 .....	40
II.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방법 .....	42
1. 조정과 중재 .....	42
2. 피해구제보도문 유형 .....	43
III. 보도청구 관련 주요 조정 사례 .....	45
1. 개 요 .....	45
2. 정정보도청구 사례 .....	46
3. 반론보도청구 사례 .....	48
4. 무모하고 무감각한 편집으로 인한 피해사례 .....	54
IV. 결 론 : 언론보도 시 유의점 .....	56

# 보도청구 관련 조정사례로 본 언론분쟁의 현황 및 보도 시 유의점

김 충 일 (前 경향신문 기획사업본부장, 서울제6중재부 중재위원)

## I. 서론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언론조정중재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함)』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언론중재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쉽게 말하면, 언론보도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시, 언론중재위원회가 피해자와 언론사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함으로써 분쟁이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재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조정중재제도를 든 것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언론보도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피해의 정도 역시 신속하고 크다는 데 있다. 또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개인이나 기업들이 소송이나 재판을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워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언론조정중재제도는 신청인의 신청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조정이 완료되고, 비용도 무료이다.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 등이 기존에 소송에 대해 가졌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누구든지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인 것이다. 언론사 입장에서도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분쟁이 해결된다는 측면에서 언론조정중재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조사 참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수가 1981년 44건, 1990년 159건, 2000년 607건, 2010년 2,200여건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온 것도 언론조정중재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언론분쟁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언론조정중재로 구제받을 수 있는 피해유형은 다양하다. 명예훼손,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사생활 침해 등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소송으로만 가능하지만, 정정이나 반론보도와 같은 보도형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는 단독으로 혹은 병합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보도형 청구의 대표적인 유형인 정정이나 반론보도는 보도의 진위를 따지는 정확성, 보도의 타당성을 따지는 객관성에 대한 시비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조정 및 중재의 초점은 보도내용이 정확한지, 객관적인지를 따지게 되고, 중재부는 신청인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을 언론사에 권유하거나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언론의 기본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비판, 고발기능이라고 할 때, 그 기능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반격을 당할 빈틈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주요 신문사에는 취재기자가 있고, 담당 데스크가 있고, 부장이 있고, 또 편집자가 따로 있어 기사가 문제되면 최종적으로 편집국장이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사소한 사안을 부주의하게 취급하거나, 불필요하게 감정을 자극하는 어휘를 써서 스스로의 격을 떨어뜨리거나, 의도를 지나치게 드러내다 보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때로 원기사에 대한 정정 보도나 반론보도가 게재되는 것은 보도 매체와 기자의 신뢰성 그리고 보도 의도 자체를 훼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언론들은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방법 중에 보도형 청구와 관련한 언론조정 중재 현황 및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취재, 편집 혹은 보도 내용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등을 짚어보고 향후 언론보도 시 유의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방법

### 1. 조정과 중재

신청인은 언론피해구제를 신청할 때 조정과 중재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언론사 사이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을 법률가와 언론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재부가 객관적이고 법률적인 입장에서 개입하여 당사자 사이의 이해와 화해를 이끌어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중재’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언론사가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을 언론중재위원회의 종국적 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중재’는 신청 전에 양 당사자가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합의를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중재합의서)을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과 중재는 신청인 유형, 신청대상매체, 신청가능기간 등에서는 동일하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물론 일반단체나 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중재대상매체는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 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이다. 기존에는 신문과 방송 등 매스미디어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지만, 뉴미디어 등장에 맞추어 대상매체 범위를 확장해 왔다. 특히 2009년 언론조정중재대상이 된 포털은 뉴스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원기사제공언론사의 기사를 그대로 게재한다는 측면에서 언론이라 보기 어렵지만, 언론에 준하는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상매체에 포함시켰다.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보도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6개월이 지난 보도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 한편, 추후보도청구는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무혐의나 무죄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조정과 중재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함으로써 신속한 피해구제를 가능케한다. 다만,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때에는 21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조정과 중재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정 후 ‘조정성립’이 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언론사는 조정성립된 내용대로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등을 게재하여야 하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언론사가 조정성립이 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법원에 이행을 강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조정성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재부는 ‘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린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의사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중재부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은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당사자가 결정 정본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중재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중재결정에 따라 언론사는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등을 게재하거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언론사가 그 결정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조정과 동일하게 신청인은 법원에 이행을 강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2. 피해구제보도문 유형

언론조정중재제도에서 피해구제방법은 크게 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로 나눌 수 있다. 보도청구에는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3가지가 있다. 손해배상청구가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시 도입된 반면 반론보도청구와 같은 보도청구는 1981년 언론조정중재제도 도입 시부터 있어 왔으며, 현재도 가장 보편적인 언론조정중재제도에 의한 피해구제방법이라 할 수 있다. 언론조정중재사례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정정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란 “언론보도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진실하지 않아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언론사에 이를 진실에 맞게 고쳐서 보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는 해

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는 후 6개월 이내에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정정보도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에 합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언론중재법 제15조 제3항).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여야 한다(언론중재법 제15조 제5항). 정정보도문은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포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도록 규정하고 있다(언론중재법 제15조 제6항). 그러나 조정제도가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결론을 내리는 만큼 정정보도 내용이나 게재 방법 등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 (2) 반론보도청구

반론보도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언론사에 그 보도내용과 대립되는 자신의 주장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반론보도 역시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않는다. 정정보도의 경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는 심리 중의 핵심 사안이지만, 반론보도의 경우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사건과 관련된 여러 주체의 입장이 다를 수 있음에도 언론이 일방의 입장만을 보도함으로써 사건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다른 일방에게도 동일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론보도는 따로 규정을 둔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3) 추후보도청구

추후보도는 “언론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무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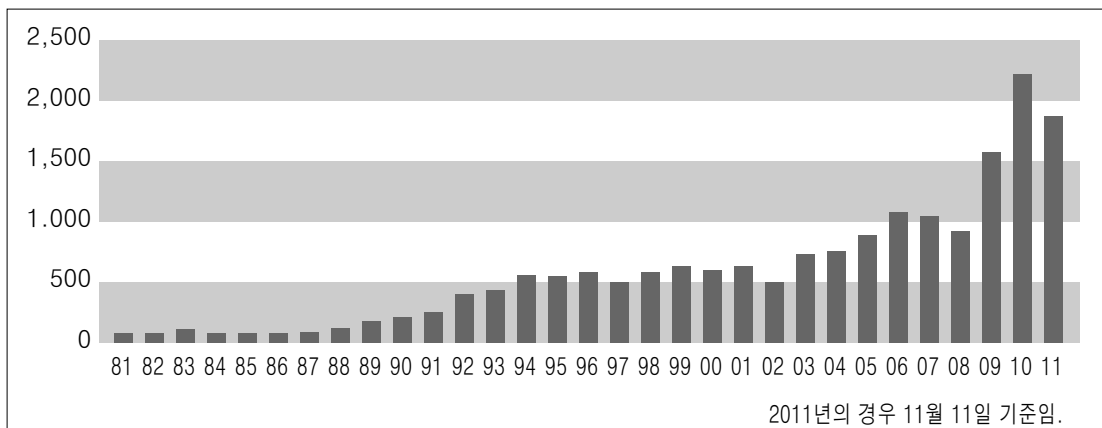
판결 등을 받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해당 언론사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신청인은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Ⅲ. 보도청구 관련 주요 조정 사례

#### 1. 개요

언론중재위원회는 1981년 설립된 이후부터 현재(2011. 11. 11)까지 총 18,300여건(조정 17,984건, 중재 321건)의 조정과 중재 신청을 처리하였다. 아래 [그림]을 보면, 언론조정 신청이 연도에 따라 증감을 나타내면서도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수많은 사례 중에 본 논문에서는 비교적 최근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그리고 몇 가지 시사점을 주는 사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언론조정신청 내용을 보면, 당시의 언론상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 현재의 언론보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연도별 언론조정 신청 현황



## 2. 정정보도청구 사례

### (1) 정황에만 몰두한 나머지 사실 확인이 불충분한 사례

#### a. 사건 개요

대학가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A주간신문은 지난 2011년 2월 「S대 이상한 인사 뒤숭숭」 제하로, “S 대학교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K 교수를 기소유예 처분이 나기 전날 이미 학과장으로 임명했다. 또한 K 교수는 보직을 받은 후 총장에게 ‘자신을 고발한 교수 4명과 함께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보냈고, 이를 학교 측에서 수용해 동료교수 4명의 연구실을 폐쇄했다. 한편 동료교수 4명이 법원에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교수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S 대학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인 S 대학교는 “① 동료교수 4명의 연구실이 폐쇄된 것은 K 교수가 보직에 임명되기 이전이므로, K 교수가 보직을 맡은 후 연구실이 폐쇄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② K 교수는 기소유예 처분이 아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S 대학교가 K 교수의 ‘기소유예’ 사실을 안 직후 학과장에 임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③ K 교수가 제출한 탄원서의 주 내용은 ‘동료교수 4명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공포에 떨고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배려를 해 달라’는 취지였으며, 법원은 ‘연구실 폐쇄’ 부분에 대해서만 S 대학교가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 간접강제를 통해 이 부분만을 이행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반박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위원회에 제출했다(2011서울조정330·331).

#### b. 심리 내용

조정심리에 참석한 A주간신문은 “S 대학교에 K 교수와 관련된 사안을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자료요청을 했으나, S 대학교가 끝내 이에 응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주변 정황 및 인물들에 대한 취재만 할 수 있었고, 이를 정리해 기사화한 것이다. 하지만 K 교수 관련 문제로 신청인 S 대학교 내부에 상당한 분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그에 대한 정황을 보도한 것이므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해당 조정신청을 담당한 중재부는 “K 교수가 기소유예 처분이 아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 K 교수 보직 임명 전에 동료교수 4명의 연구실 폐쇄에 대한 메일을 이미 발송했던 사실 등 신청인 S 대학교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 측에서 충분한 사실관계 파악 및 확인을 하지 못한 채 정황을 기초로 4인의 교수의 말에 의존해 기사를 작성, 게재한 것”으로 보았다.

또 설령 전체적인 맥락이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라도 일단 신청인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기사를 정정하도록 조정했다.

## (2) 기본적인 취재가 부실한 사례

### a. 사건 개요

A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0년 10월 『‘G20’ 깨자, 좌파진영 80여 개 단체 뭉쳤다』 제하의 기사에서 “H 단체는 2009년 이적단체로 분류된 바 있는 친북단체로서 공식적으로는 해체되었지만 여전히 활동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H 단체는 “청소년의 복지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친북단체와는 무관하다”며 A 인터넷 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2010서울조정1408·1409).

### b. 심리 내용

조정심리 과정에서, A 인터넷 신문이 H 단체나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확인을 하지 않은 채, H 단체를 친북단체로 단정해 보도한 것임이 확인됐다. A 인터넷 신문은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고, 중재부의 권고에 따라 정정보도를 하고 손해배상은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시하는 수준에서 조정에 합의했다.

## (3) 사회적 파급성 높은 사안에 대한 집착과 선입견이 개입된 사례

### a. 사건 개요

소비자 관련 소식을 전하는 인터넷 신문 A사는 “B사가 생산, 판매하는 음료 C에서 머리카

락과 눈썹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검출됐다”는 제보자 D씨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 보도하면서 B사의 실명 및 음료 제품명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B사는 “제품 제조 공정 과정 중에 절대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다”며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이물질은 섬유조직의 일종으로 보이며, 현재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A사에 이야기했으나, 오히려 A사는 ‘논란 확산을 경계하며 압박성 발언과 경고를 했다고 기사를 작성, 보도’했다”며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위원회에 청구했다 (2010서울조정1583).

#### b. 심리 내용

조정신청을 담당한 중재부는 해당 제품을 조사한 기관에 사실조회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해당기관에서는 “문제의 이물질이 제조공정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은 없다”는 회신을 중재부에 보내왔다.

중재부는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제보자의 말만 듣고 회사명과 제품명을 공개하고 B사의 제품에서 나온 것이 머리카락과 눈썹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A사에 정정보도로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A사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정보도 및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으로 B사와 원만하게 합의했다.

### 3. 반론보도청구 사례

반론보도청구 주로 보도 매체의 사안에 대한 견해, 시각에 대한 이의제기에서 시작된다고 하겠다. 대부분의 경우 기자나 언론기관들이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방향성을 기사에 반영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되며 거기서 보람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그 경우 극히 객관적이고,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는 논거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가치평가가 개입되는 코멘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비판한다고 인신공격성, 비아냥거림, 야유성 단어를 구사하는 것은 품위와 자기 실력의 부족, 경박함 같은 것을 드러내는 경우가 되기 쉽고, 자료에 대한 일방적인 해석, 한쪽으로만 치우친 인터뷰어 동원 등은 ‘편향적’이란 비판을 감내해야 한다.

## (1) 과도한 공격적 비판기사로 인한 청구 사례

### a. 사건 개요

A 주간지는 2011년 3월 『황금알 거위 B 사의 배 누가 가르나』 제하로, 생활용품 전문기업인 B 사가 내분에 휩싸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A 주간지는 “B 사의 양대 주주 중 하나였던 C 사가 주주배당을 크게 높이고, 기술사용료를 대폭 증액해 요구하는 등 B 사의 이익 빼가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C 사는 이미 사장으로 내정됐던 인사를 내치고 자신들에게 호의적이었던 D 씨를 사장으로 앉히는 ‘궁정쿠데타’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B 사의 임원 상당수가 그만두는 결과가 초래됐다. 사장으로 선임된 D 씨는 B 사의 핵심경영가치였던 ‘인간존중경영’, ‘사회공헌’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등 내부에서 ‘변절자’ 취급을 받고 있다. 한편, C 사는 B 사의 전임 사장 E 씨가 나간 후, B 사의 자율경영 전통을 폐기하고 경영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B 사는 “B 사의 양대 주주에 대한 배당은 이사회 의 만장일치로 결의된 합법적인 것이며, 기술사용료 인상 역시 양 주주사와 B사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므로 ‘이익 빼가기’가 아니다. 또한 D 사장은 양 주주사의 합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이사회에서 선임 되었으므로 ‘궁정쿠데타’가 아니며, 취임 시 약속한 ‘사원존중 및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약속을 일관되게 지켜오고 있으므로 ‘변절자’라는 표현은 지나치고 사실도 아니다. 또한 B 사의 경영권은 B 사에 있으므로 자율경영 전통을 폐기하고 C 사에 경영권을 빼앗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2011서울조정226).

### b. 심리 내용

조정심리 과정에서 B사는 “B사의 양대 주주인 C사와 F사 간에 일부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A 주간지는 일방 당사자인 F사의 의견만을 듣고 기사를 작성, 보도해 오히려 F사의 홍보수단으로 전략하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주간지는 “B사 비서실과 홍보팀을 통해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B사에서는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반론 의사나 의견 개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기사를 작성, 보도한 것이다. 또한 기사에 기자 개인의 의견이 들어갔다고 주장하지만 F사 및 B

사에서 오래 근무한 전·현직 임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이 상당히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의견이라 판단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조정신청 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들은 신청인측 주장대로 ‘일방적’인 기사일 수도 있지만 “틀린 부분은 당연히 정정이 필요하지만, 팩트를 놓고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적용하면 언론에게 아무런 기능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 팩트에 대한 해석이 과도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이 이렇게 잘못됐고, 우리의 입장은 이렇다’라는 반론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언론이 모두 잘못했다고 정정을 주장할 수는 없다. 팩트의 해석에 대해서 언론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숫자나 사실관계가 명확히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할 것을, 그 외 사안의 해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B사의 반론을 충분히 실어주는 반론보도로 할 것을 양 측에 권고했다. 이 사건은 보도자체의 맥락이 틀려서가 아니라, 기자가 다소 정의감이 지나친 나머지 과도하게 양측은 선과 악으로 구분짓고, 기자가 한쪽편에 서서 신청인측을 자극적인 어휘를 빈도 높게 사용하여 매도함으로써 빚어진 갈등이었다.

이 때문에 피신청인은 별것도 아닌 몇 가지 숫자 때문에 정정보도를 내보내야 했다는 점에서 원보도의 의도를 반감시켰다. 결국 양측은 중재부의 권고를 수용해 정정 및 반론보도와 함께,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신청인측을 만나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켜 원만히 합의하였다.

## (2) 사실관계 규명이 어려운 사건 사례

### a. 사건 개요 I

중앙일간지 A신문은 지난 2010년 7월 『“다 즐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래?”』 제하로, “국회의원 B씨가 국회의장배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다 즐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심사위원들은 (토론)내용을 안 듣는다. 참가자들의 얼굴을 본다’, (청와대를 방문한 여학생에게) ‘대통령이 너만 쳐다보더라’, ‘사모님만 없었다면 네 번호도 따갔을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성희롱·성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 B씨는 “남학생들로만 구성된 C대 토론팀에게 ‘심사위원들은 실력도

중시하지만 이미지도 본다. 그런데 상대했던 D대 팀 학생들이 평범한 이미지인 것에 비해 C대 팀은 너무 다 잘생겨서 오히려 손해를 본 것이 아니냐'고 위로하는 취지였을 뿐, 외모를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었다. 아나운서와 기자 사이에서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에게, '기자가 창의성을 더 발휘할 수 있으므로 기자가 낫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조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아나운서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한 바는 없다. 또한 대통령이 여학생만 쳐다봤다는 부분은 '1년 4개월 전에 아나운서를 지망하다는 여학생이 청와대 만찬에 참석했던 여학생임을 알게 되어 그 당시 대통령이 어린 학생들이 참석한 것을 기특하게 여겨 학교와 전공을 묻기까지 했다'는 취지였지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이었던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반론보도를 청구했다(2010서울조정1133·1134).

#### b. 심리 내용 I

조정심리에 참석한 국회의원 B씨는 "기자가 당시 매우 시끄러운 고깃집에서 있었던 대화를 멀리 떨어져 있던 학생에게서 전해 듣고 취재하여 과장, 왜곡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신문은 "그 자리에 동석했던 복수의 학생에게 확인해 취재를 마쳤고, 이후 학생들이 B씨가 기사 내용과 같이 발언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낸 바도 있으므로 사실 보도이며, 이미 이 건과 관련해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소송절차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정신청을 담당한 중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조정절차를 통해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B씨의 주장 중 A신문이 보도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으로 실어줄 필요는 있다"고 판단, A신문에 반론보도 게재를 권유했다. 이에 A신문은 중재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국회의원 B씨는 당시 학생들과의 모임이 주위가 매우 시끄럽고 산만한 고깃집에 있었고, 대화가 4인 테이블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졌으며, 문제의 아나운서 발언은 취재기자가 해당 학생으로부터 직접 확인한 바가 없고, 국회의원 B씨의 발언이라는 부분도 평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며 전후 맥락상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국회의원 B씨가 밝혀왔다"는 반론보도를 게재했다.

#### c. 사건 개요 II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국회의원 B씨는 "A신문이 지난 조정(2010서울조정1133·1134)

에서 합의한 반론보도문 바로 옆에 재반론을 게재함으로써 반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A신문에 반론보도문을 재게재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2010서울조정1193·1194). 그러나 국회의원 A씨는 조정심리 전에 조정신청을 취하해 국회의원 B씨와 A신문 간의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A신문이 『알려왔습니다(반론보도)는 정정보도가 아닙니다』, 『B의원 끝없는 거짓말... 언론중재위 문건까지 왜곡』 제하로 <2010서울조정1133·1134> 사건에서 합의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면서, 그 옆에 “당시 해당 발언을 직접 들은 학생들을 상대로 취재했고 확인 과정을 거쳤으며, 반론은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일 뿐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취지로 보도하고, “앞선 사건에서 반론보도로 합의된 내용을 국회의원 B씨가 마치 언론사가 기사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정정보도한 것처럼 부풀려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B씨가 특히 보도자료에서 ‘취재기자가 아나운서 발언과 관련해 해당 학생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고 취재한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는데 심리 당시 A신문 대리인은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 B씨는 “당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참석했던 A신문 기자가 ‘아나운서 관련 발언을 들은 당사자인 김 모 여학생에게 전화 통화를 확인한 바 있지만, 김 모 여학생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다’라고 인정해, 이를 반영한 반론보도문이 작성된 것”이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2010서울조정1195·1196).

#### d. 심리 내용 II

조정심리에 참석한 국회의원 B씨는 “A신문이 반론을 게재하면서, 반론보도 바로 옆에 일방적인 재반론을 게재하여 반론보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대해 A신문은 “본지 대리인이 심리 중 ‘구체적 사실을 확인한 바 없다’라고 발언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이미 소송 계류 중이므로 이 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소송을 통해 밝히겠다”고 맞받았다. 결국 담당중재부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양 당사자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렸다.

### (3) 무리하게 보도 방향에 맞추려 반론권 무시하다 뒤늦게 반론권 허용한 사례

#### a. 사건 개요

A 방송은 지난 2010년 5월, 한 시사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공직의 무게 - 학자와 논문』 제 하로, 교수 출신 공직자들의 논문 이중게재 의혹에 관한 내용을 방송했다. A 방송은 현직 국회의원 중 대학교수 출신 국회의원의 논문이중게재 의혹에 대해 취재하면서, 교수출신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인 신청인 B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A 방송은 “……확인결과, 이중게재 의혹이 제기된 의원은 6명이었다. 의원들의 해명도 공직자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내레이션에 이어 “저 같은 사람이 쓰면 막 여기저기서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존에 나갔던 논문, 발표했던 논문도 ‘발표된 것 잘 봤습니다’, ‘그것 좀 신게 해주세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쪽에 실으면서 ‘니 논문에 그것을 안 썼느냐?’ 고 원 저자에게 얘기하면 원 저자는 참 답답한 거죠”라는 B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 B씨는 “A 방송이 문제삼은 논문은, 내가 저술한 책이 C학회가 선정하는 ‘○○언론법상’의 2003년도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제2회 ○○언론법상 수상기념 학술세미나’에서 수상기념 논문으로 발표한 것이다. 그 후 이 논문을 보완, 정리해 교내 학회지에 실었는데, C학회에서 ‘수상자의 기념논문이었던 학술세미나 발표문을 학회지에 게재하고 싶다’고 요청한 후 그대로 게재한 것뿐이다. 즉, 이 논문은 내가 자진해서 이중 투고해 발생한 이중게재가 아니라, 시상자였던 C학회가 수상자인 나의 수상기념 논문을 학술세미나 기록용으로 학회지에 게재한 것이다. 학회에서는 수상작이나 초빙논문을 다시 게재하는 것을 이중게재로 보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형태의 게재는 서울대학교의 ‘연구윤리규정집’ 등에서도 이중게재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정을 충분히 취재자에게 설명했음에도, 일반 시청자들이 윤리적·도덕적으로 비난할 것인 뻔한 ‘이중논문 게재’라는 용어를 사용해, 나를 악의적인 이중게재를 한 다른 인사들과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보도했다. 또한 인터뷰 역시 이 논문이 두 곳에 실리게 된 경위에 대한 인터뷰 내용은 빼놓고, 발언의 일부만을 악의적으로 편집, 보도해 공직자로서의 명예에 상당히 큰 손상을 입혔다”며 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2010서울조정915).

#### b. 심리 내용

조정심리 과정에서, A 방송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논문 이중게재 및 연구비 이중 수령의 연구부정행위를 파헤치고자, 교수출신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논문 실태를 점검하고 이중게재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었다”고 취재의 도를 밝혔다. 이어 A 방송은 “신청인 B씨는 C학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연구실적을 올리

기 위해 의도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므로 이중게재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중게재 여부를 가릴 때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지는 않는다. 또한 특집 또는 선집일 경우에는 이중게재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해당 논문이 실린 책자에는 특집이나 선집이라는 표현이 어디에도 없다. 더군다나 신청인 B씨는 논문이 게재된 C학회 학회지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신청인 B씨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해 보도를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양 측의 주장에 대해 조정신청 사건을 담당한 중재부는 “외형적, 결과적으로 보면 이중게재라고 볼 수 있겠으나, 해당 보도는 이중게재인지 여부만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중게재를 없애자는 취지로 비판하기 위한 목적의 보도로 판단된다.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사정이 있을 것이고, 신청인 B씨는 논문의 이중게재로 연구수당이나 승진 등에 있어 특별한 이익을 얻었거나 추구한 것이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반론은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반론은 보도의 공익성, 또는 진위 여부와 전혀 별개의 청구로서, 내용의 타당성과 공익성을 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신청인 B씨의 반론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며 반론보도를 권고했다. 이에 양 당사자는 중재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반론보도로 원만히 합의하였다.

#### 4. 무모하고 무감각한 편집으로 인한 피해사례

##### (1) 무감각한 편집 사례

###### a. 사건 개요

광주 지역에서 고속버스 사업을 하고 있는 G고속관광은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G고속관광이 운영하는 버스가 유사석유를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됐다는 소문이었다. 화들짝 놀란 G고속관광은 소문의 출처를 찾기 시작했고, A협회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경악하고 말았다. A협회 신문은 지난 2011년 3월 『시민들이 탑승하는 버스도 유사경유 주입』제하로 “유사경유를 판매한 판매자와 이를 구입해 사용했던 버스기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는 기사와 함께, G고속관광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는 버스가 줄지어 주차되어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이 사진을 보고 G고속관광의 거래처나 고객사, 심지어는 차고지 관할 공무원들까지 G고속관광이 유사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G고속관광에 문의를 해온 것이었다. G고속관광은 곧바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위원회에 제출했다(2011서울조정343·344).

## b. 심리 내용

조정심리에 출석한 A협회 신문은 신속하게 본인들의 잘못을 시인했다. A협회 신문은 “유사 석유 사용 적발 기사를 작성한 후, 이에 부합하는 자료 사진을 찾는 과정에서 우연히 G고속관광 소속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사진을 발견해서, 이를 별 생각 없이 기사에 게재했다”고 기사 보도 경위를 밝혔다. A협회 신문은 즉각 G고속관광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A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팝업으로 정정보도를 내보내고 A협회 신문 1면에도 정정보도를 게재했다. 또한 150만 원의 손해배상에도 합의했다.

보도 내용과 전혀 무관한 업체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데다가, 기사 내용이 G고속관광의 영업이나 활동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A협회 신문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사진을 게재하고, 모자이크 등의 적절한 처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본 사진은 위 보도와 관련이 없습니다”라고만 부연했더라도 곤욕을 치루지 않을 수도 있었다.

## (2) 무모한 편집 사례

### a. 사건 개요

인터넷 신문 A사는 지난 2010년 1월, 『시민채널 ○○○, 공산주의 선전방송인가』 제하로 “시민채널 ○○○이 제작하는 모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이 만든 내용을 심의 없이 내보냈다가 일부 문제가 지적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 지원금 중단 조치를 받았고, 결국 해당 프로그램이 종영됐다. 또한 참여정부 5년 동안 총 150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운영했고, 사회주의 옹호를 편집방향으로 하는 방송내용이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 시민채널 ○○○은 “보도에서 지적된 프로그램은 내부의 자체 운영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며 방송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중단을 받거나 프로그램을 종영한 사실이 없다. 또한, 참여정부 기간 동안 150억 원이 아닌 83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집행했고, 이념적 성향과 무관하게 시청자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편성원칙으로 하는 시청자 참여 방송이므로 사회주의 옹호를 편집방향으로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2010서울조정160).

### b. 심리 내용

조정심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인터넷 신문 A사는 신청인 ○○○에 보도내용과 관련해 직접 취재를 하거나 관계기관을 통한 간접 취재를 한 바 없고, 모 시민단체의 성명서 보도자료를 받아 이를 여과 없이 재작성해 보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시민채널 ○○○의 반론이나 주장은 전혀 게재하지 않고, 시민단체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만을 기사화한 것이다. A사는 중재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 (3) 일방적 제보에 의존한 보도한 사례

#### a. 사건 개요

재건축 관련 뉴스를 전하는 A신문은 “B 재건축추진위원회 일부 임원이 C공기업을 정비업체로 선정하는 가계약을 맺은 후, 본 계약 체결 전에 C공기업 책임자와 일본 관광을 다녀왔고, 그 후 가계약에서 제시된 금액대로 본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B 재건축추진위원회 임원이었던 신청인 D와 E는 “C공기업과의 계약을 이용해 일본에 관광을 다녀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일본에서 있었던 재개발 관련 세미나 때문에 일본에 다녀온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회의사진 등을 제시하며 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2010서울조정1338).

#### b. 심리내용

조정심리를 통해 A신문은 “B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였던 F씨와 G씨의 제보에만 의존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신청인들에게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며 신청인들의 정정보도 요구를 수용했다.

## IV. 결론 : 언론보도 시 유의점

이 글은 최근의 언론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향후 보도 시 유의점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앞의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할까 한다.

첫째, 언론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정확한 팩트

를 전달하는 것이다. 여러 언론들이 경쟁하고 실시간으로 뉴스를 전달해야 하는 매체환경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례에서 보았듯이 객관적 근거 제시 없이 정황만으로 기사를 작성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제보나 풍문에만 의지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것 등은 뉴스의 진실성이나 정확성 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정확하지 않은 팩트를 뉴스로 생산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정정하는 태도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사건 당사자의 입장을 고르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언론이 일방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국민들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사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사례에서 보여주었듯이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 일방의 입장을 강조하거나 단정적으로 결론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사건 당사자의 여러 입장들을 균형 있게 취재하고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편집 시 인격권과 관련해 침해되는 부분이 없는 지에 대해 보다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특히 여기서 데스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취재를 하는 기자들은 시간에 쫓겨 급하게 뉴스를 생산하거나 데스크보다 경험이 부족기에 인격권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데스크가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들에 인격권 침해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한 것인지, 일방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례에서 나왔듯이 최근 영상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이나 영상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재됨으로써 조정중재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언론조정중재제도와 같은 피해구제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어떤 제도도 일단 발생한 피해를 완벽하게 복구할 수는 없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보도에 일단 부정적인 내용으로 언급되는 것 자체가 이미지의 손상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손해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론 개인이나 기업 등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 따라서 언론은 기사 작성 시 개인이나 기업 등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본의 아니

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언론이 피해구제보도문 게재 등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2010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조사에 따르면 언론인들이 언론조정중재 신청을 받은 후 기사 작성이나 편집에 있어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언론보도와 인격권’ 관련 교육을 받은 언론인들이 교육내용이 취재 및 편집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런 결과는 언론인들이 언론보도와 인격권에 대한 교육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게 될수록 기사 작성 시 인격권의 침해 가능성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자들이 언론보도와 인격권과 관련한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 MEMO

---

---

# MEMO

---

---

# MEMO

---

---

# MEMO

---

---

**MEMO**

---

---

---

# MEMO

---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안내

<p>서울중재부 및 사무처</p>	<p>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대표전화 : 02) 397 - 3114                  법무상담팀 : 02) 397 - 3000, 3010, 3100, 3110                  팩스 : 02) 397 - 3089</p>
<p>부산중재부</p>	<p>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739(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전화 : 051) 759 - 7083~4 / 팩스 : 051) 759 - 7093</p>
<p>대구중재부</p>	<p>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6(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전화 : 053) 763 - 0020~1 / 팩스 : 053) 763 - 0242</p>
<p>광주중재부</p>	<p>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85(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전화 : 062) 676 - 0360~1 / 팩스 : 062) 676 - 0362</p>
<p>대전중재부</p>	<p>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450(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전화 : 042) 525 - 0778~9 / 팩스 : 042) 525 - 0768</p>
<p>경기중재부</p>	<p>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인계동 116-1) 경기문화재단 8층                  전화 : 031) 211 - 9027, 9022 / 팩스 : 031) 212 - 0223</p>
<p>강원중재부</p>	<p>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전화 : 033) 255 - 2878~9 / 팩스 : 033) 255 - 2872</p>
<p>충북중재부</p>	<p>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4(산남동 657) 엔젤번호사빌딩 404호                  전화 : 043) 286 - 8083, 8081 / 팩스 : 043) 286 - 8084</p>
<p>전북중재부</p>	<p>전북 전주시 완산구 감영로 72(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전화 : 063) 288 - 0010, 0981 / 팩스 : 063) 288 - 0980</p>
<p>경남중재부</p>	<p>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369번길 5(사파동 80) 보고빌딩 601호                  전화 : 055) 263 - 1787, 1780 / 팩스 : 055) 263 - 1769</p>
<p>제주중재부</p>	<p>제주도 제주시 남광복5길 6(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전화 : 064) 722 - 3328, 3352 / 팩스 : 064) 726 - 3201</p>





